

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11. 5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11. 6
- 라. 上程日字 : 1998. 11. 11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: 自 治 行 政 課 長 方 景 泰)

가. 提 案 理 由

- 「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부칙 제4조에 의거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
 - 매년(2000년, 2001년)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,
 - 지난 '99.9.9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16,550호에 의거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동 조례 부칙 제4조(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의 규정중
 -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각각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⇒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변경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을 매년(2000, 2001년)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「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를
 - 지난 '99.9.9일자 공포시행된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에 의거 매년 6월30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
-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「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//호
의 결 년 월 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11. 5 .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7.
제출자 : 서산시장

개정이유

-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을 매년(2000년, 2001년)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정원조례를 지난 8월 25일 개정·공포하였으나
- 대통령령 제16,550호('99. 9. 9)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함.

주요골자

-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(2000년, 2001년) 7월 31일까지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(안 부칙 제4조).

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

- 대통령령 제16,550호('99. 9. 9)
- 충청남도 행정 12200-122('99. 9. 13)호
 - 「기구 정원규정개정령」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조중 “7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조례.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	<p>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
<p>제4조(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 치)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 조 및 부칙 제2조표 2의 규정에 대 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 은 각각 매년 <u>7월 31일</u>까지 정한다.</p>	<p>제4조(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 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-----</p>